

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태훈 의원 등 8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1일

3. 제정이유

○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~제2조)
-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을 규정함(안 제3조)
-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보조금의 신청, 교부, 정산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~제6조)

-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(안 제7)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필요성

-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1989.04.01. 시행)되어 시행되고 있고, 동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에 지원하고 있었음.
-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.
-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현재 9개 자치단체에서 “한국자유총연맹”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·시행하고 있음(표-1 참조).

[표-1] 광역자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조례 제정 현황

(2024.3.31.기준)

연번	시·도	조례명	제정일
1	전남	전라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	2012.12.27.
2	세종	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	2013.05.10.
3	경남	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	2014.02.13.
4	부산	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	2015.01.01.
5	제주	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	2018.04.04.
6	울산	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	2018.07.12.

연번	시·도	조례명	제정일
7	경기	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	2019.07.16.
8	대전	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	2023.08.11.
9	충남	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	2024.02.20.

- 충청북도 내 11개 시·군 기초자치단체 중 현재 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“한국자유총연맹”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·시행하고 있음(표-2 참조).

[표-2] 충북 기초자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조례 제정 현황

(2024.3.31.기준)

연번	시·군	조례명	제정일
1	제천	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	2013.12.27.
2	단양	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	2014.09.19.

나. 주요 내용

- ‘안 제1조’는 조례의 목적으로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명시함.
- ‘안 제2조는’ 조례에 사용되는 “한국자유총연맹”의 용어를 정의하여 그 개념과 대상을 명확히 함.
- ‘안 제3조는’ 도지사가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

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
- ‘안 제4조’는 도지사가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.
- ‘안 제5조’안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관하여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르도록 규정함.
- ‘안 제6조’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지원의 금지 내용을 규정함.
- ‘안 제7조’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규정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이번 제정 조례안은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근거하여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에 지원하던 것을 조례를 통해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.
- 또한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의 사업활동에 대한 사기진작과 격려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 됨.
- 다만,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서 국가도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동조 제2항에서

개인, 법인 또는 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및 출연재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[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 현황]

- 지원 근거 :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
- 설립 : 1954. 6. 15.(2000.5.16. 비영리단체 등록)
- 조직 및 회원 수 : 도 지부 및 11개 시군 지회, 29,130명
- 사무실 소재지 :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87(용암동, 자유회관)
- 주요사업 : 자유 수호 및 안보의식 제고, 통일준비, 안보시찰 등

붙임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. 끝.